

2022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개요

1. 일시: 2022. 1. 11.(화) 16:48-17:31
2. 장소: 원격 영상 회의(ZOOM)
3. 출석: 재직 이사 15명 중 12명 출석
 - 가. 회장 직무대행: 김우현
 - 나. 부회장: 정연재
 - 다. 이 사: 노광민, 이재철, 김태정, 권기성, 박승현, 신경구, 김민철, 김형기, 이재빈, 임종훈
4. 상정안건
 - 가. 전차 회의록(2021-10차 이사회)
 - 나. 보고사항
 - 1) 회장 사임 및 회장 직무대행
 - 2) 임원의 사임
 - 다. 심의사항
 -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6시 48분)

□ 전차 회의록

- 가. 사회자 회의록 보고
- 나. 참석자 주요 발언: 없음
-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보고사항

1. 회장 사임 및 회장 직무대행

가. 주요 내용

1) 제19대 박기철 회장 사임

직 위	성 명	사유	사임서 제출 일자
회장	박기철	일신상의 사유	2022. 01. 03.(월)

2) 회장 직무대행

직 위	성 명	근거	체육회 인준
(실무)부회장	김우현	2021년 제2차 이사회(2021.3.09.) 보고사항 제1호 「임원(부회장, 이사)의 선임」 (정관 제21조에 따른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순서: 실무부회장을 1순위로 함)	인준 문서 접수 완료 (2022.01.06.)

※ 관련 근거

대한요트협회 정관
<p>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p> <p>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p>

나. 참석자 주요 발언: 없음.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2. 임원의 사임

가. 주요 내용

1) 사임 이사 명단

연 번	직 위	성 명	사 유	사직서 제출 일자
1	이 사	이 문 관	일신상의 사유	2022. 1. 10.(월)
2	이 사	전 지 은	일신상의 사유	
3	이 사	이 천 재	일신상의 사유	
4	이 사	김 수 범	일신상의 사유	
5	이 사	이 광 원	일신상의 사유	
6	이 사	이 동 우	일신상의 사유	2022. 1. 11.(화)

※ 관련 근거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 현황 (사임 임원 반영 후)

구 분	임 원				
	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정 원	31명	1명	7명 이하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2명
현 재	17명	0명	2명	15명(회장 직무대행, 부회장 포함 / 남자 12명, 여자2명)	2명

나. 참석자 주요 발언

- 회장 직무대행: 전화를 받은 임원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부 시도관계된 분들과 전 집행부 인원들이 현 이사님들께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함.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현 이사들에게 저희들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직을 권유하고, 일부 이사들은 어제 오늘 사이 사직서를 낸 것임.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지만 외적인 사유로 보임. 오늘 여기 접속하시거나 사직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들의 확고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함. 무엇보다도 일련의 어제 오늘의 일들은 대한요트협회가 안정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함. 저를 비롯한 임원님들이 그동안 10개월 동안 임원 활동을 하시면서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공정을 갖고 소신껏 협회 이사회라던가 각종 대회, 내지는 이런 업무 활동을 저희가 볼 때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잘 했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부 다섯 분 정도 됨. 이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가 차후에 자리를 통해서 이분하고 논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걷어낼 수 있는 자리를 새로운 회장님이 선거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갖도록 하겠음. 협회가 안정적이고 화합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여섯 분이 나가셨는데 일부는 새로운 회장님 들어오시면 요트협회의 이사로 다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도 계시고 저에게 전화도 하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요트에 관심이 있고, 경기인 출신, 선수 출신, 요트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분들이 아실 것임. 그분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 협회가 지난 20년 동안 분란에 항상 있었음. 그런데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함.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지금 40-50대 분들임.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50대 후반, 60 넘으신 분들임. 사실 경기인들끼리, 선후배 간에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이고 여기를 도와주시는 임원님들께 죄송한 일인데, 아무쪼록 저도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 원활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회장님을 모시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숙제에 관해서는 조속히 자리를 마련해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소상하게 사실에 입각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없으신지.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들림.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심의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가. 주요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2) 위원 위촉 절차

○ 회장(직무대행)이 추천 -> 이사회 동의 -> 회장(직무대행)이 위촉

○ 위원장: 위원 중 호선함.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음

3) 추천 위원 명단 (7명으로 구성, 외부위원 5명 이상)

연번	성명	소속/직위	구분 (외부/협회관련)
1	김관중	로펌미성 / 변호사	외부 (법조계)
2	김성래	법률사무소 선율 / 변호사	외부 (법조계)
3	오경록	경희대학교체육대학 / 교수	외부 (학계)
4	하희문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 대우교수	외부 (학계)
5	백승철	뉴스1 / 경제부 차장 (해양수산부 출입)	외부 (언론계)
6	조광환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 부위원장	협회관련
7	남성우	경기도요트협회 / 부회장	협회관련

나. 참석자 주요 발언

- 회장 직무대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 최종 선출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일곱 명으로 구성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조계에 변호사님들 두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김관중 변호사님으로 로펌 미성 변호사이며, 현 북부지방법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동작경찰서, 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이며,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를 하고 계심. 김성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로 전)서울특별시 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맡아 활동을 하셨음. 이렇게 법조인 두 분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니고 지인을 통해 추천을 받은 분들임. 체육종목단체다보니 체육을 이해하시면서 선거관리위

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음. 공정성 차원에서. 저도 이분들은 잘 모름. 먼저 오경록 교수님으로 경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희대학교 총 13개 종목을 육성하는데 총괄하고 있음. 한 분은 하희문 교수님, 카이스트 인문학과학부 대우 교수로 스포츠사회학박사임. 언론계도 한 분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뉴스원 통신사의 해수부 출입 기자인 백승철 기자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을 추천 함. 두 분은 요트계 쪽에서 구성해서 일곱 명을 맞추어야 하는데 요트계쪽은 여러 이사님들이 어느 분들이 공정하게 선관위 활동을 하실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음. 추천해주시고 싶은 분계시면 두 분을 추천 바람.

- 000 이사: 공정성도 필요하다 보니 시도협회라던지 클래스협회에 소속감도 없고 오랫동안 요트 활동도 하시고, 대한요트협회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글 올라온 거에 관심도 가지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음. 조광환님이라고 해양대 OB 출신. 나름 요트쪽으로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어떠한 협회단체라던지에 소속도 없다 보니까 공정성 있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추천 드림.
- 회장 직무대행: 혹시 한 분 더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000 이사: 현재 경기도요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남성우 부회장님을 선관위 위원으로 추천함.
- 회장 직무대행: 추천받으신 남성우 님은 현재 경기도요트협회 부회장이신데 정관상 선임 과정에 규정에는 문제는 안 되는지.
- 사회자: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총7명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최소 5명이어야 함, 나머지 두 분은 협회 관련 인사가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회장 직무대행: 또 추천해주실 분 있는지.
 -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장 직무대행: 총 일곱 분이 지금 추천되었음. 의장인 제가 학계 두 분, 언론계 한 분, 법조계 두 분 이렇게 총 다섯 분을 추천해드렸음, 김형기 이사님이 조광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이재철 이사님께서 남성우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음. 혹시 이 분들 중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분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사님들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람.
 -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장 직무대행: 그러면 동의안을 내겠음. 일곱 분에 대해서 선관위를 구성하는 걸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는지.
 -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들림.

다. 논의 결론 : 다음 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동의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구분 (외부/협회관련)
1	김관중	로펌미성 / 변호사	외부 (법조계)
2	김성래	법률사무소 선을 / 변호사	외부 (법조계)
3	오경록	경희대학교체육대학 / 교수	외부 (학계)
4	하희문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 대우교수	외부 (학계)
5	백승철	뉴스1 / 경제부 차장 (해양수산부 출입)	외부 (언론계)
6	조광환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 부위원장	협회관련
7	남성우	경기도요트협회 / 부회장	협회관련

□ 기타사항

1. [심의 사항] 임원 보선

가. 안건 상정 배경

- 안건 발의: 김태정 이사 (※사유: 6명의 이사가 사임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 있음.)
- 안건 상정: 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라,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안건 상정
- 관련 근거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15조(이사회 의 소집)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 이사의 결원 발생 시 보선 절차: 정관 제22조제5항에 따름.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 이사회도 개최하여야 하고, 현재 재적 이사 총15명으로 1명만 더 사임하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음.

다. 참석자 주요 발언

- 000 이사: 지금 이사님들이 여섯분이나 사임한 관계로 이사 충원이 필요함.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었으면 함.
- 회장 직무대행: 이사님들이 사직하면서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앞으로 결산 이사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추진 시 이사회 동의 받아 추진하려면 이사회가 구성

되어 있어야 함. 여기서 한명만 더 사퇴하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음. 긴급한 상황으로 여겨짐. 김태정 이사가 발의한 임원 보선에 대한 건을 전원 동의해주면 안건 상정 하도록 하겠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지.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들림.

○ 회장 직무대행: 그럼 전원 동의로 받아 들여도 되겠는지.

▶ “예.”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들림.

○ 회장 직무대행: 그럼 참석하신 임원의 전원 동의로 임원 보선의 건을 상정하겠음. 임원 보선을 몇 명으로 대상자는 누군지 어떻게 임원 보선을 진행할지 다양한 의견 제시 바람.

○ 000 이사: 이사 6명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나름 추천을 하려고 준비를 했음. 추천을 받아서 하면 어떨지.

○ 회장 직무대행: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보선할 이사 추천 바람.

○ 000 이사: 요진건설산업 비서실장으로 있으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동희씨를 추천함.

○ 회장 직무대행: 일괄 추천을 받고 심의하겠음. 추천할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000 이사: 제주도에 있는 M1971 요트투어 최기원 대표이사를 추천함. 제주도에서 가장 큰 요트투어 회사로, 요트에 관심도 많음.

○ 회장 직무대행: 이 사업장이 우리협회의 이권과 관련된 업체인지.

○ 사회자: 상호만 들어서서 알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요트투어업을 하는 분과 협회의 교류는 수년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정관에는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업체와 거래관계가 없음.

○ 회장 직무대행: 더 추천할 사람있으면 말해 달라. 없으면 제가 한 분 추천해도 될지.

▶ “예.”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들림.

○ 회장 직무대행: 대회위원장으로 현재 요트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 관련 실무를 보고 있으며, 대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광석 위원장을 추천함. 업무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해야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음. 모셔서 집행부의 사업을 논의할 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그 동안 자리가 없었음. 이번 보선에 추천하고자 함. 현재 강릉시청 감독이며 강원도요트협회 전무이사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오랫동안 요트를 했음. 이에 추천함. 다른 분 추천할 분 있는지. (없음을 확인 후) 그럼 이 3명에 대하여 반대하시거나 의견 있으면 의견 바람.

▶ “동의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재청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장 직무대행: 그러면 반대로, 반대하는 분이 있는지.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장 직무대행: 그러면 이 세분으로 보선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다. 논의 결론 : 박동희 요진건설산업 비서실장, 최기원 M1971 요트투어 대표이사, 안광석 대회위원장을 이사로 보선함. (폐회선언: 17시 31분)